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개정('19.10. 1)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(안 제23조제4항, 별표 3 및 별표 4)

- 1)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% 이내에서 30% 이내로 개정함
- 2)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

나.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(안 제34조의2)

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

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, 하천수 취수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,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

다.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(안 제38조의 4)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중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”로,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징수비용의 교부)”를 “(징수비용의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상당하는”을 “해당하는”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지급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환경개선 특별회계법」”을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”으로, “지급하여야”를 “지급해야”로 한다.

제20조의3을 삭제한다.

제23조제4항 중 “20퍼센트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해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”을 “수립지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4조의2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2호) 가목 중 “하천

수를 냉각수로”를 “하천수를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냉각수로”를 “하천수로”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2호)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”를 “제2호 또는 제3호의 하천수 사용자가”로, “충족하는 경우”를 “갖춘 경우”로 한다.

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

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로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

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4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2 제3호 중 “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0호”를 “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
별표 2 제1호나목3)가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(셋째자리는 버린다)하고, 총인(T-P)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(넷째자리는 버린다)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(제23조제1항 관련)

1. 간접지원사업

가. 소득증대사업

- 1)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지원사업
- 2)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·유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
- 3)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복지증진사업

- 1)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사업
- 2) 의료, 보육 등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사업
- 3)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육성사업

- 1) 교육기자재 공급,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
- 2) 장학지원을 위한 사업(대학생은 등록금 지원에 한정한다)
- 3)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

- 1) 오염물질 정화시설,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,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
- 2)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

3)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비고

1.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.
2. 시설 등의 운영비용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.
2. 직접지원사업: 주거생활의 편의 도모, 공공요금 납부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
3. 특별지원사업: 지역의 수질 개선,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)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「 <u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</u> 2인 이상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.	제11조의2(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) ① ----- ----- ----- 「 <u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4 <u>호에</u> 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<u>징수비용의 교부</u>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·시장·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(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)의 10퍼센트에 <u>상당하는</u> 금액을 광역시장·시장·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<u>교부하여야</u> 한다.	제19조(<u>징수비용의 지급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지급해야</u> -----.
② 환경부장관은 「 <u>환경개선 특별회계법</u> 」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	② ----- 「 <u>환경정책기본법</u> 」----- ----- -----

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
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·시
장·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3(완충저류시설) 법 제18

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기술·인력·장비를 갖춘
자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
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자일 것

가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
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
엔지니어링사업자(상하수
도분야 또는 수질관리분야
로 한정한다)

나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
지원법」 제15조제3항에
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
을 모두 보유할 것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
른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
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
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
른 전기산업기사 이상

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

----- 지급해야 -----.

<삭 제>

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
이상 또는 정밀측정산업기
사 중 1명

3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1
제1호가목1)부터 4)까지에 해
당하는 기기를 모두 갖추 것

제23조(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)

① ~ ③ (생 략)

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
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
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
되,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, 오
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
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
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
· 배분한다.

⑤ (생 략)

제24조(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
등)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
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
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
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
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
주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
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
제23조(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30퍼센트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
등) ① -----

----- 위해 -----

----- 통보해야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
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
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
대한 평가 기준

② ~ ⑥ (생략)

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
진 결과를 분석·심의하고, 향
후 사업계획의 심의·조정 시
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
석·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
위원회가 정한다.

제34조의2(하천수의 사용자에 대
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) 법 제
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
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
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
을 면제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2. -----

수립지침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제34조의2(하천수의 사용자에 대
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) 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
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
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

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
행령」 제2조제4항에 따라 하

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. <u>하천수를 냉각수로</u> 사용한 후 취수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하천에 방류할 것 나. <u>냉각수로</u>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에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<u>아니할</u> 것 제38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,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	<u>천수로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</u> 4. 제2호 또는 제3호의 하천수 사용자가 --- <u>갖춘 경우</u> 가. <u>하천수를</u> ----- ----- ----- 나. <u>하천수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을</u> ----- 제38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

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38조의4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9조에 따른 수질기준: 2015년 1월 1일

2. 삭제

3.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: 2014년 7월 29일

4. 제39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: 2014년 7월 29일

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2